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268
----------	-----

제출년월일 : 2013. 11. 11 .

제 출 자 : 장문혁의원외2

1. 제안이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관광 개발사업자를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올림픽 관광유산을 공고히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보조금 지급대상 규정(안 제3조제2항)

- 우수관광 콘텐츠 육성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체험시설 조성·육성사업
- 우수 관광자원 개발사업,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72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집행기관 의견수렴('13.10.2. ~ '13.10.21) : 없 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3.10. 2. ~13.10.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용역을 제공 또는 기념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평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콘텐츠 육성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체험숙박시설 조성·육성사업
3. 우수 관광자원 개발사업
4.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5.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행을 위한 지원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신청수요가 불특정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의 추측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의원 장문혁
연락처	(033) 330 - 2508

관 계 법 령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